

## 현행 지하수법의 개정방안

// 이병호 (농업기반공사 지하수사업처)

## I. 改正理由

### □ 地下水法을 국가 지하수관리 基本法으로서의 位相定立을 위하여

- 他 法律과의 關係를 定立하고 지하수 所有權을 國家에 歸屬시켜 管理 主體로서 國家의 總괄적인 責務를 強化하며,
- 지하수에 관한 重要사항을 審議調整하기 위한 審議機構 設置 地下水資源 管理에 필요한 財源確保 및 投資效率化를 위한 法的 根據 新設 등
- 그간 지하수법 시행과정에서 導出된 제반 문제점들을 일괄 整備하므로서 法 執行의 效率性 增大

### □ 지하수의 量的 管理에 있어서

- 최근 지하수 수요의 急增으로 지하수이용량이 1994年 이후 年間 3.5억톤씩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0年の 國內 지하수이용량은 지금의 2배 수준인 약 73億~75億톤으로 전망 됨
- 1998年末 현재 國內지하수 適正 開發可能量 132억톤 對比 利用率은 23.3%로 향후 개발 潛在餘力은 충분하나,
  - 全國 229個 시·군·구별 지하수이용을 분석결과 適正開發可能量 대비 100% 초과 地域이 16個 地域으로
  - 1996年 3個 地域에 비해 2年 사이에 13개 地域이 증가하므로서 지하수 量的管理의 문제점에 대한 適切한 보완대책의 必要性 擡頭
- 또한, 지하수법상 개발·이용의 인·허가제도 운영과정에서 1998年末 현재 총 施設數 974千孔 中 81.6%를 占有하는 輕微施設에 대한 실질적 管理手段 미비로 資源의 總量 管理制度의 재정립 필요
  - 특히, 1997年 導入한 許可制度 운영 과정에서 申告施設과의 行政規制 強度의 不均衡으로 인한 제도적인 虛點 多數발생
- 따라서, 근래 급증하는 지하수개발·이용 추세에 相應한 法體系로 補完·整備하므로서 수자원의 兩大軸인 지하수관리를 보다 體系的이고 合理的으로 改善하고자 함

### □ 지하수의 質的 管理에 있어서

- 지하수와 物理的, 化學的으로 直接 連結된 土壤에 있어서는 土壤環境保全法에 汚染에 대한 豫防·改善對策, 責任과 義務規定, 技術的·行政的 措置나 節次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地下水汚染에 대한 法的·制度的 裝置 未備로
- 현실적으로 당면한 심각한 地下水汚染에 대한 對應措置가 불가능함
- 따라서, 국민개인의 財産·健康과 生態係의 막대한 被害 및 國家 전체의 귀중

한 財產的 損失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豫防할 수 있도록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여 지하수자원을 유효 적절하게 開發·利用 및 保全·管理하고자 함

## II. 法律改正 主要骨子 및 內容

(1) 地下水法의 目的 및 관련 用語의 定義를 定立하고 지하수의 所有權을 國家에 歸屬시켜 국가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強化, “地下水管理基本計劃” 樹立 範圍 明示 등 基本 法令 부문 재정립(案 第1條내지 第4條, 第7條)

### 가. 目的의 재정립(案 第1條)

○ 지하수오염이 환경상 미치는 影響 및 危害 豫防에 관한 立法目的 명시 보완

### 나. 用語의 定義(案 第2條)

○ 지하수관리의 先進 技法導入에 따라 추가된 內容 補完

- |                 |              |
|-----------------|--------------|
| • 우물場           | • 地下水汚染防止 措置 |
| • 지하수 保護·保全 區域  | • 自然低減       |
| • 지하수 開發制限 區域   | • 廢孔處理       |
| • 地下水影響調查評價 업체  | • 取水井 保護區域   |
| • 汚染誘發 行爲·手段·施設 |              |

### 다. 지하수 公水概念 導入(案 第3條)

- 지금까지 지하수使用 및 所有權에 관하여 우리 憲法 및 法律은 특별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土地 所有權者가 地下를 흐르는 지하수를 管掌하되, 國家가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許可 또는 申告 등의 公的제약을 가하는 公概念的 立法形態를 維持해 왔음
- 그러나 國際的으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지하수의 量的·質的 低下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적 對안으로 지하수의 所有權을 國有로 선언하는 立法이 주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社會的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 또한, 外國의 立法例를 보더라도 지하수의 所有權을 國有로 宣言하는 立法例를 發見할 수 있으며, 이는 지하수 所有權에 대한 國有선언이 지하수의 특성상 土地 所有權의 本質的 侵害에 해당하지 않는 證據임
- 따라서, 지하수 所有權을 國有로 宣言하는 立法政策을 採擇하여 지하수를 국가 전체 水資源의 일부로 보고 國有로서 管理할 責任을 國家에서 부여하므로서
- 公的資源에 대한 지하수開發·利用 行爲 및 지하수汚染 行爲 規制 등 量과 質에 대한 體系的 管理가 가능해지고, 지하수利用에 대한 使用料 부과의 法律的 根據가 마련되므로써 지하수管理에 대한 投資效率化 기대

**라. 地方自治團體의 地下水管理 責務規定 新設(案 第4條)**

- 國家 일변도의 지하수 開發·利用 및 保全·管理 責務를 地方自治團體와 함께 분담토록 하므로써, 地域性이 강한 地下水管理의 推進效率 補強

**마. 地下水管理基本計劃 樹立(案 第7條)**

- 국가 지하수관리정책 추진의 基本指針書인 地下水管理基本計劃 수립 범위에 지하수이용량 占有比率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農漁村整備法上 第2條의 農漁村用水 및 第18條의 2에 明示된 農漁村用水利用合理化計劃 반영 明示(案 第7條)

(2) 근래 地表水 利用의 제약으로 地下水利用量이 폭증하는(年平均 3億톤씩 增加) 추세 변화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하수 開發·利用 体系 再定立(案 第8條내지 第28條)

**가. 許可權者 變更**

- (現 行) : 시장·군수 許可
- (改正案) : 건설부장관에게 還元시킨 후 權限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委任
- ※ 變更許可, 許可期間 연장, 許可取消權 등

나. 지하수법이 지하수 관리의 基本法的 성격을 갖출 수 있도록 먹는물管理法上的 “먹는물샘물 許可”, 濟州道開發特別法上的 “지하수開發·利用 許可”, 溫泉法上的 “土地掘鑿許可”를 받은 者에게는 地下水法에서 許可를 받은 것으로 擬制 조치

다. 揚水能力에 의해 구분하고 있는 輕微施設 및 申告·許可 施設 基準의 強化

規制 區分	現 行	改 正 案
免 除	無動力 利用, 湧出水	現行과 같음
	輕微施設 30톤/일 以下	-
申 告	生活用水 30~100톤/일 農業用水 30~150톤/일	-
登 錄	-	生活·農業用水 30톤 以下 ( $\phi$ 75m/m 以下の 층적관정)
許 可	生活用水 100톤/일  초과 農業用水 150톤/일  초과	生活 및 農業用水 30톤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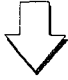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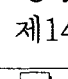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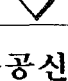
주」 1998年末 현재 전체 지하수이용량의 81.6%를 점하는 輕微施設의 제도적관리를 強化하기 위하여 行政 規制 단계가 높은 “登録施設”로 격상 관리

주」 현행 신고/허가 시설의 경우 고가의 지하수영향조사비 부담 등 제도간 規制強度의 不均衡으로 許可회피 동기를 誘發하고 있고, 이에 따른 效果的 통제手段이 없으므로, 모두 허가지설로 統合管理

단, 影響調査는 우물調査로 대체하여 費用負擔을 1/3 水準으로 절감 改善

라. 지하수 開發·利用에 따른 行政節次 改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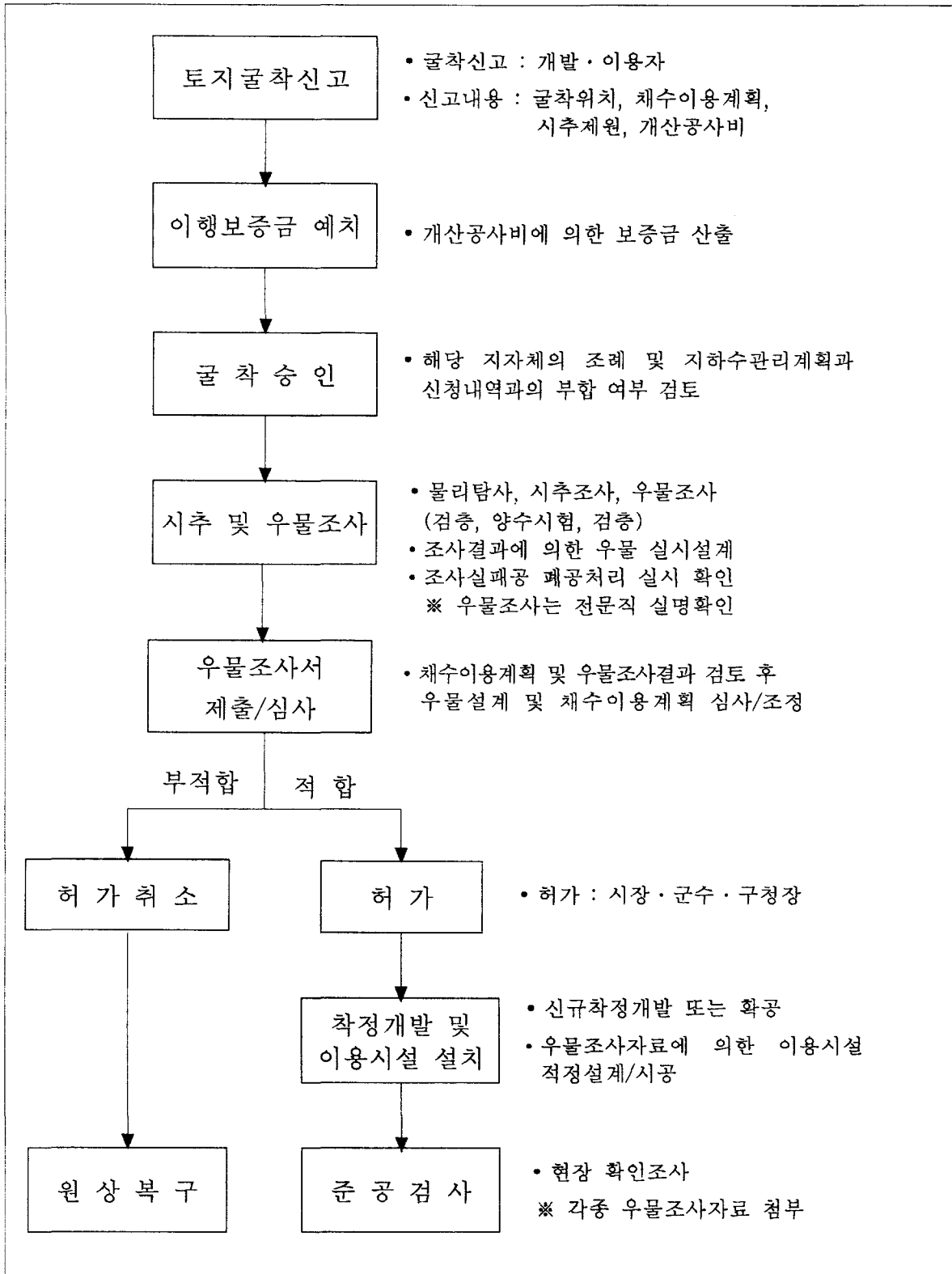
(1) 현행 지하수개발·利用 申告/許可 과정의 문제점

행 정 절 차	문 제 점
<div data-bbox="220 405 651 50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개발·이용 신고/허가</b>                      &lt;법 제7조 및 제8조&gt;                 </div> <div data-bbox="400 544 467 622"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굴착허가 과정이 누락되어 시추단계에서의 오염관리 부재</li> <li>• 신고/허가 서식이 정보화에 부적합</li> <li>• 개발이용자가 취수계획량을 실제보다 낮추어 허위로 신청할 개연성이 있음</li> </ul>
<div data-bbox="220 660 651 78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지하수영향조사</b>                      &lt;법 제7조&gt;                 </div> <div data-bbox="236 790 639 824" style="margin-left: 20px;">                     ※ 신고시설은 영향조사 생략                 </div> <div data-bbox="400 831 467 909"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조사비가 고가(건당 13백만원)</li> <li>• 계약상 고용관계에 있는 영향조사기관의 조사 신뢰도 의문</li> </ul>
<div data-bbox="220 913 651 103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허 가</b>                      &lt;법 제7조&gt;                 </div> <div data-bbox="400 1043 467 1122"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선 시·군의 행정능력상 허가여부를 판단할 전문가 및 정보인프라 부족으로 허술한 허가 심의</li> </ul>
<div data-bbox="220 1039 651 116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이행보증금예치</b>                      &lt;법 제14조&gt;                 </div> <div data-bbox="400 1169 467 1247"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불 계약이 관행화 되어있어 실제 폐공 처리 시공업체에 공사비 미지급 사례 빈번 ⇒ 폐공방치 주원인</li> </ul>
<div data-bbox="220 1164 651 129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준공신고</b>                      &lt;법 제9조&gt;                 </div> <div data-bbox="400 1294 467 1373"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신고 서식이 정보화에 부적합</li> <li>• 수중 TV검층 등 지하매설 부분의 검사기능 부재</li> </ul>
<div data-bbox="220 1290 651 141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개발·이용</b>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조직 및 인력부족으로 사후 감시수단 부재 (과잉 채수, 시설방치에 의한 오염 등)</li> </ul>

(2) 지하수 開發 · 利用許可 節次改善 構想(案)

개발 · 이용자		허 가 기 관	
○ 토지굴착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착위치, 용수목적, 소요수량</li> <li>- 시추 제원(구경,심도)</li> <li>- 시추업체,굴착이용</li> <li>- 지번, 지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접수/심사 및 신고필증 교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수영향권 검토</li> <li>- 보전구역특별관리 구역 등 제한여부 사전검증</li> <li>- 신고 필증교부</li> </ul>
○ 이행보증금예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착공사비의 10/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보증금 적정성 검토</li> </ul>
○ 시추 및 우물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추주상도</li> <li>- 단계 양수시험에 의한 적정양수량 산출</li> <li>- 기존 용수이용권을 보호하고 밀집개발 방지를 위한 영향권 산출</li> <li>- 물리검층, 수질성적서</li> <li>- 부적합 시추공 폐공 처리</li> </ul>		
○ 허가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물조사결과서 첨부</li> <li>- 지하수이용계획 작성 (추가굴착 · 확공 및 이용시설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 및 허가 조건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물조사서에 근거하여 적정허가수량 조정</li> <li>- 허가수량 이용에 필요한 이용시설 (모터동력, 토출 관경) 조건제시</li> <li>※조사 부적합 시추공 폐공처리 적정여부 심사</li> </ul>
○ 착정개발 및 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조건에 따라 착정 및 이용시설공사 시행</li> </ul>		
○ 준공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화에 필요한 각종 우물자료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조건 이행 여부검사</li> <li>※수중 TV 검층에 의한 오염방지시설 적정여부 검사</li> </ul>

(3) 行政節次 制度改善(案)





라. 현행 地下水影響調査를 간편한 汚水調査로 대체하여 개발·利用者 負擔경감 및 調査의 內實化(案 第8條)

(1) 汚水調査 項目 및 調査基準(案)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1. 원수의 개발 가능량 및 산출 상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지역 일대에서 기 시행한 기존의 지질, 지하수조사 자료를 최대한 수집·확보하여 아래의 수리지질현황을 파악한다. 가. 기존우물 및 샘의 현황 나. 잠재오염원</li> <li>2.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km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범위까지 확대한다.</li> <li>3. 개발대상지역내에 기설치되어 있는 기존우물이나 개발대상지역에 신규로 설치한 시험공을 이용하여 장기대수성시험과 단계대수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대수성 수리상수(투수계수, 투수량계수, 저유계수, 비양수량)와 우물수두손실계수 및 우물효율을 구한다.</li> <li>4. 시험기간은 연속 2일(48시간)동안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계대수성시험은 최소 5단계 이어야 한다.</li> <li>5. 장기대수성시험결과와 단계대수성시험결과를 이용하여 해당 우물의 적정채수량을 양수량-수위강화(Q-S) 곡선해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li> </ol>	적정채수량 및 허가 산정량
2. 적정채수량과 영향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항에서 결정된 적정채수량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지하수를 채수할 때 그 영향범위를 2-D의 적절한 전산기법을 이용하여 예측 한다.</li> <li>2. 예측결과 주변에 소재하는 잠재오염원이 개발대상우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제시한다.</li> </ol>	영향범위안의 잠재오염원과 상관계관 규명 및 대책
3. 수 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기대수성 시험 종료시 현지에서 물시료를 채취하여 물분석을 실시한다. 물분석 항목은 별표-5의 지하수 강제수질기준에 준한다.</li> </ol>	원수 수질의 적정성

**마. 流出·放流 지하수의 再利用(案 第9條)**

- 현재 국내에서 지하철, 도수터널, 高速鐵道 등 지하수 構造物 工事に 의해 주변의 下水施設을 통해 大容量으로 放流되는 지하수의 量에 대해 감소대책 또는 유익한 용도로 再利用이 가능하도록
- 基礎 터파기를 실시하는 시행자로 하여금 流出防止對策 및 利用計劃을 수립하게 하고 관할 市長·郡守에게 申告케한 후 이를 遵守토록 하는 규정 도입
- 시장·군수는 이를 生活·農業·工業, 河川維持水, 청소, 消防用水 등 다용도로 활용토록 조치하고 再利用 不應시에는 改善命令 등의 行政 措置

-----<大容量 放流 事例>-----

- 서울지하철 1~5호선 : 78,500~92,700톤/일
- 서울지하철 6~8호선 : 200,000톤/일
- 부산지하철 1~2호선 : 1호선 3,181~3,354톤/일
- 영천댐 도수터널 : 제 1사갱 757~2,497톤/일  
제 2사갱 1,209~3,557톤/일  
제 3사갱 479~2,180톤/일
- 황간소재 고속전철 : 3,000~6,000톤/일

**바. 지하수의 분류와 관리에 先進技法 도입(案 第13條내지 第15條)**

- (1) 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의 地下水資源을 현상태의 水質 및 水量에 비하여 低質化를 防止하고 양호하게 保護·管理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1~4급 지하수로 分類
- (2) 지하수급수별 分類時 주민의見 청취 및 再分類시에는 과학적 입증자료에 따르도록 함

국내 지하수 分類 方案(案)

구 분	지하수역(대수층) 분류			
	1급(GAA)	2급(GA)	3급(GB)	4급(GC)
분 류 기 준	1) 처리하지 않고서도 공공 음용수원으로 적합한 지하수로서 a) 위해 행위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수 b) 유일대수층내에 저유된 지하수 c) 민감 함양지역의 지하수 2) 항상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지하수역내 지하수 및 현재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3) 현재 음용수원인 지표수체에 양질의 기저유출을 제공하는 지하수(공공 급수용 저수지 상류에 부존된 지하수) 4) 대체 할 수 없는 용수원인 지하수 5) 현 취수정 보호구역이나 잠정 취수정보호구역 이내에 부존된 지하수	1) 처리하지 않고서도 추후 공공 및 시설용수 및 생활용수로서 적합한 지하수 2) 1급 지하수와 동일하나 위해행위에 노출된 지하수 3) 주요 생태계, 동·식물종의 서식지의 자연보전에 기여하는 지하수 4) 현재는 음용수원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나 추후 공공 음용수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지하수	1) 기관장이 공공 및 시설 음용수 용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정한 지하수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하부에 부존된 지하수 a) 공·상업행위와 같은 인간활동이 활발한 도시지역내 지하수 b) 고형·유해폐기물과 하수 슬러지의 비운명 배립지 일대의 지하수 c) 영구 폐쇄 배립지·처분장 주변의 지하수 2) 1개 성분 또는 물질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 3) 토지 이용 및 기타 행위로 인해 추후 양호한 수질보호가 확실치 않는 지역에 부존된 지하수 4) 일반 정수처리를 한 경우 음용수원으로 이용 가능한 지하수 5) 개인 가정용, 기타 농·공·생활용수의 유익한 이용에 적합한 지하수 6) 초기 분류시 적용한 지하수로서 1, 2급 및 4급 지하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지하수	1) TDS가 5,000ppm, Cl 이온이 3,000ppm 이상인 지하수 2) 자연적인 수질특성을 상실하여 장기적인 지하수질의 저질화를 초래한 지역의 지하수 3) 잠재오염원 인근에 부존된 오염지하수로서 일반적인 수처리 방법으로 음용수용으로 처리하거나 정화가 불가능한 지하수 4) 현재 및 과거 토지 이용과 수리지질학적인 조건 때문에 음용수원 개발보다는 각종 폐기물 처분 업무에 적합한 지역내에 부존된 지하수 5) 지하수 관리구역내에 부존된 지하수 6) 오염물질의 배출·방류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의 지하수 7) 음용수원으로는 부적합하나 기타 용도로는 이용가능한 지하수
수 질 기 준	지하수의 수질기준과 지하수 오염경고기준 적용	지하수의 수질기준과 지하수 오염경고기준 적용	현 지하수의 수질이나 배경수질 적용, 지하수 오염지시인자 적용	적용치 않음
정 화 기 준	지하수의 수질기준이나 위해성 기초정화기준중 1개	지하수의 수질기준이나 위해성 기초정화기준중 1개	위해성 기초 정화기준	적용치 않음

**사. 지하수水質監視計劃 制度導入(案 第16條)**

(1) 지하수管理區域 내에서의 遵守支店 設定

지하수관리구역 (Groundwater Management zone, GMZ)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수관리구역은 지하수가 이미 오염된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li> <li>○ 신규오염유발 행위·시설이 주변수질에 미치는 영향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li> </ul>
준수 지점 (Compliance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지점</li> <li>○ 1·2급 지하수 분포지역의 경계지점이나 그 이내 지점</li> <li>○ 시·도지사 및 관계기관이 오염유발행위·시설로부터 지하수의 오염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3차원의 지하수관리구역과 부지 경계와의 사이에 위치한 지점</li> <li>○ 오염유발 행위·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신고한 오염유발행위·시설들로부터 오염물질의 누출·배출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수질감시관측 지점 등</li> </ul>

(2) 强制水質基準, 汚染警告基準이 초과되지 아니하고 최소화되도록 義務化

(3) 기준 초과시 및 汚染事故 발생시 시장·군수에 申告 義務

**아. 다른 規制機關에서 施行하고 있는 許容 및 非許容行爲 認定(案 第20條)**

(1) 지하수에 影響을 주는 諸般行爲들을 主管하는 管轄 지역소재 地方環境廳 및 각 地下水專門 公共機關들은 지역내 地下水保護를 向上시키기 위하여 공동협력

(2) 또한, 地域 소재관련 專門機關들은 지하수보호에 필요한 제안을 해당 市·道知事에게 제안 할 수 있는 規定 導入

(3) 既存의 地下水保全區域 指定 制度를 改善하기 위하여 地下水 保護·保全 區域의 指定 地下水開發 制限區域 指定·管理, 取水井保護區域의 指定 등으로 세분화하고 폐공처리제도 강화, 토지수용 및 사용제도, 허가 등의 擬制, 地下水水質基準의 分類 및 地下水汚染 公正試驗法 등을 規定함 (案 第21條 내지 第36條)

**가. 地下水保護·保全區域의 指定(案 第21條)**

- (1) 지하수의 고갈, 地盤의 沈下 또는 地下水汚染防止를 위해 필요한 地域
- (2)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함양 地域
- (3) 유일대수층 분포지역(新設)
- (4) 음용수원인 取水井 및 우물장 保護區域(新設)
- (5) 1·2급으로 분류된 지하수중 지하수保護가 필요한 地域

※ 유일대수층 : 음용수중 50% 이상을 공급하는 帶水層으로서 汚染시 대체 用水 源이 없는 帶水層

**나. 地下水開發 制限 區域指定·管理(案 第22條)**

- (1) 적정개발가능량 초과 지역
- (2) 고갈, 지반침하 우려지역
- (3) 構造物, 施設物 및 地盤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地域
- (4) 과잉채수로 염수침입 우려 地域
- (5) 장래 지하수保護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地域

**다. 取水井 保護區域(WHPA)의 指定(案 第24條)**

- (1) 管轄 區域내 음용수, 각 중 급수용우물에 대해 取水保護區域 設定 義務化
- (2) 시장·군수가 取水井 保護區域 指定計劃을 樹立하고 시·도지사의 承認을 받아 指定

**라. 廢孔處理 規定 定立(案 第28條)**

- 현행법상 “原狀復舊” 制度로 명칭하여 新設되는 지하수汚染管理에 수반되는 原狀復舊와의 概念 混同을 피하기 위하여 廢孔處理로 바꾸어 概念을 明確히 定立

마. 土地 등의 收用 및 使用 制度 導入(案 第31條)

- 觀測網, 水質測定網 設置에 필요한 사유土地, 物件의 收用 및 使用을 원활히 하기 위해 規定

바. 地下水觀測網 設置시 관련 法規에 의한 認·許可 事項(6개 法律)은 關係機關과 協議토록 하고 協議한 때에는 認·許可 등을 받은 것으로 擬制 규정 신설(案 第32條)

사. 建設교통부장관은 地下水수질에 實質的이거나 潛在的인 영향을 주는 모든 地下水汚染誘發 行爲·施設로부터 地下水의 저질화를 防止하기 위하여 汚染 地下水의 淨化基準에 使用하기 위한 水質基準을 環境부장관과 협의하여 決定(案 第34條)

- (1) 地下水의 强制水質 基準
- (2) 地下水의 汚染警告 基準
- (3) 地下水 汚染警告 基準으로서 地下水汚染 指示因子의 최대 허용 변화치
- (4) 汚染地下水의 淨化基準

아. 地下水水質의 統一性, 公正性 및 信賴性을 기하기 위하여 地下水오염 公正試驗規定 도입(案 第36條)

(4) 地下水의 量的管理에 비해 相對的으로 法的/制度的 基盤이 脆弱하여 현실적으로 당면한 地下水汚染에 對應措置가 불가능하므로 土壤環境保全法에 相應한 地下水汚染管理 規定 新設(案 第38條 내지 第46條)

가. 地下水汚染誘發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시·도지사에게 申告하게 하여 사전에 汚染防止措置制度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地下水汚染檢査 制度를 규정(案 第38條)

나. 地下水汚染誘發 行爲·施設의 所有者와 運營者에 대한 당해 시설의 運營 및 使用中止 命令, 汚染地下水改善事業 命令 및 汚染防止 措置命令 제도를

規定(案 第39條 내지 第40條)

다. 지하수汚染 被害에 대하여 汚染源因者の 無過失責任을 明文化하고 多數의 汚染源因者에 대하여 連帶責任制를 制度化(案 第42條)

라. 汚染防止施設의 安定的 運營·管理를 위해 지하수汚染 誘發行爲·施設의 所有者 및 運營者에 대해 管理責任者 任命, 從事者 教育, 管理責任者의 임명 범위, 자격 등을 規定(案 第45條)

(5) 지하수 開發·利用施工業 登録業体の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登録基準, 缺格事由, 讓渡·讓受, 登録取消 등을 規定(案 第47條 내지 第51條)

가. 현행법과 登録基準, 缺格事由, 讓渡·讓受, 登録取消 規定은 동일함

나. 다만, 現行 登録基準은 改善의 여지가 있으나, 영세한 업계의 현실을 감안 最低基準으로 存置하여 法 改正에 따른 혼란을 防止하고 無免許 業体の 양성화를 유도하되,

다. 工事 規模에 따라 施工 참여 자격을 차별화하여 補完

< 기 본 구 상 >

- 소형관정(구경 3인치 이하의 소구경 층적관정)  
: 현행 등록기준 적용
- 중·대형 관정(구경 3인치 이상의 암반관정)  
: 장비 보유 및 기술자 보유 업체로 제한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유의 경우 1년이상 장기계약에 한해 인정

(6) 지하수 開發·利用 許可에 필요한 “우물조사”와 지하수保護·保全과 汚染 地下水의 評價 및 淨화작업을 수행하고 “地下水影響調査評價 業務 修行者”에 대한 登錄基準 設定, 缺格事由, 登錄取消, 名義貸與 禁止 規定 (案 第52條 내지 第55條)

가. 業務範圍 및 登錄(案 第52條)

구 분	우물조사자	지하수영향조사평가자
허가청(등록)	주된 사무소의 시·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업 무 범 위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대상 시설의 우물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수의 분류(1~4급)</li> <li>• 지하수 감시</li> <li>• 지하수보호·보전구역 지정 및 지하수개발 제한 지역의 조사, 평가 업무</li> <li>• 지하수오염평가 및 淨화계획 작성</li> <li>• 취수정보보호구역 설정과 오염원 현장조사</li> </ul>

※ 세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나. 影響調査評價 業体の 缺格事由, 登錄取消, 名義貸與 禁止 規定 新設 (案 第53條 내지 第55條)

(7) 現行 法上의 地下水諮問委員會를 格上시켜 지하수에 관한 重要事項을 實質的으로 審議하기 위해 議決 기능을 갖춘 地下水保全管理委員會를 設置함 (案 第56條 내지 第59條)

가. 機能 및 管轄

- 中央委員會 : 全國管轄(건설교통부에 設置)
- 地方委員會 : 管轄區域官長(시·도에 設置)

나. 性 格 : 審議·諮問기구



**다. 機能(審議事項)**

- (1) 지하수保護·保全區域 指定 및 變更
- (2) 지하수開發 制限 地域의 指定 및 變更
- (3) 우물調査의 審議
- (4) 지하수分類와 再分類
- (5) 지하수水質 基準초과시 對策樹立評價 報告書 檢討·審議
- (6) 汚染地下水 淨化方法 선정
- (7) 基準이 設定되어 있지 않는 汚染地下水的 淨化基準 設定
- (8) 지하수開發·汚染으로 인한 분쟁事項 調定
- (9) 지하수使用料의 決定
- (10) 基金 運用計劃 및 資金차입에 관한 事項
- (11)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및 委員會 委員長의 요청 事項

**라. 委員會 구성**

구 분	증 양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원</li> <li>○ 위 원 장</li> <li>○ 부위원장</li> <li>○ 기타 위원</li> <li>○ 공무원이 아니 위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포함 15인 이내</li> <li>• 건교부 소속 1급직</li> <li>• 건교부 소속 2~3급직</li> <li>•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li> <li>• 임기 2년 연임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li> <li>• 소속 3급 이상 도지사 지명</li> <li>• 위원장이 지명</li> <li>• 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li> <li>• 좌와 같음</li> </ul>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위원회 직무 (나) 회의 (다) 전문위원 (라) 서기 (라) 회의록 (바) 수당 여부 (사) 운영세칙 등 시행령에 위임		

(8) 지하수가 국가의 중요한 水資源인 점을 考慮하여 財源確保의 制度的 裝置로서 國庫補助, 地方讓與金, 지하수사용료 賦課·徵收 規定을 明文化하고, 造成된 資金을 관리하기 위한 지하수管理 基金設置 根據 規定 導入 (案 第60條 내지 第75條)

**가. 事業費 財源確保 및 支援制度 導入(案)**

- (1) 國庫補助金の 支援

○ 지하수의 公概念과 國家 管理責務에 따라 국가가 필요한 所要財源의 支援 規定 導入

(2) 地方讓與金の 財源確保 支援

(가) 地方讓與金法에 의하여 自治團體에 支援하는 財源중 地下水汚染防止事業을 위한 地方讓與金の 지원 제도 導入

(나) 市·道知事 : 환경부장관, 행정자치부장官에게 지하수수질오염방지사업을 위한 地方讓與金 財源 支援要請 制度 도입

(3) 地下水使用料 賦課·徵收制度 導入

(가) 公共水資源인 지하수를 適正하게 保護·保全 및 效率的 管理에 필요한 財源 조성

(나) 지하수사용료 賦課·徵收 對象

1) 건설교통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開發·利用하는 者

2) 건설교통부장관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으로 開發·利用하는 者

[ 1日 30톤이상 開發·利用하는 者 ]

3) 滯納者 加算金 徵收 : 強制 徵收 措置

(다) 賦課·徵收된 使用料는 基金에 納入

(라) 地下水使用料 賦課·徵收를 시장·군수에게 委任한 경우 賦課·徵收 費用 시장·군수에게 교부

[徵收금액의 100분의6 ~ 100분의 10 이내)

(마) 使用料 免除 대상 등 大統領令에 위임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미 시설중 가정용수 이용자, 농업용수 및 먹는물管理法 濟州道開發特別法, 溫泉法 등 다른 法에서 許可를 받아 開發·利用하는 者]

(바) 기타 必要節次 : 下位規定에 明示

1) 減免對象

2) 사용료의 決定·變更告示 및 節次

3) 사용료 徵收金の 納入 方法 및 節次

[設置된 基金에 納入]

- 4) 使用料의 告知·납부시기 및 方法 등
- 5) 賦課·徵收權者(市長·郡守)  
[건설교통부장관이 權限 委任]
- 6) 賦課·徵收 週期 및 소정서식 등은 하위 規定에 明示

## 나. 地下水管理基金의 設置(안)

### (1) 地下水管理基金의 設置

- 政府一般會計 財源이의 부족 財源 確保를 위해 地下水管理基金 마련, 기금설치 근거 마련

### (2) 基金造成의 主財源

- (가) 政府出捐金 및 融資金
- (나) 地下水使用料, 履行保證金, 負擔金
- (다) 登錄手數料, 다른 基金의 出捐金, 借入金, 基金管理收益金 등

### (3) 基金의 用途(主要用途)

- (가) 지하수 保護·保全 및 管理에 필요한 經費
- (나) 지하수 基礎調査 汚染豫防改善 事業費
- (다) 保護區域指定·觀測網設置 管理費
- (라) 土地의 收用·使用 및 代執行에 필요한 經費
- (마) 지하수관련 研究用役 및 補助·融資支援
- (바) 借入金, 預置金, 償還金 및 損失補償費
- (사) 委員會 經費, 訴訟, 聽聞會 및 基金運用管理費 등

### (4) 基金의 運營管理

- (가) 기금의 管理機關 : 건설교통부장관(委託管理)  
受託管理機關 : 한국수자원공사(受託管理)  
[法律로 委·受託管理 制度는 普遍的·一般的인 制度임]  
우리 나라에서는 67개 個別法律에 의해 基金이 設置·管理되고 있음  
※ 한강수계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 (5) 基金管理의 法的 節次規定

- (가) 基金運用計劃 樹立  
○ 地下水保全·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管理 執行

(나) 資金의 借入

- 사업자금의 부족시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政府의 財特 또는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借入 制度 導入

(다) 기금여유資金의 管理

- 旅遊資金의 發生한 때는 지하수에 관한 基金事業 支援 등

(라) 기금에 의한 補助·融資事業

- 必要한 事項에 補助金지급 및 融資支援事業制度의 導入

(마) 기금의 會計機關 定立

- 建設 敎 通 部 : 出納命令官, 出納公務員 任命
- 韓國水資源公社 : 任員中에 基金出納 담당 任員 任命, 基金出納員 任命

[ 이때 公社任員 및 職員은 公務員 身分으로 適用 ]

(6) 기금의 缺損處理

- 基金運用管理 過程에서 불가피한 事由로 缺損이 發生하였을 때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缺損處理

(7) 기금의 決算 및 報告

- 會計年度 종료 60日 이내 基金決算 報告書 작성, 建設交通部長官에게 報告

**(9) 施設의 規模, 國家的·社會的 寄與度, 雇用·物價에의 影響 등을 고려하여 施設의 使用停止 處分에 갈음하여 過徵金을 賦課토록 함  
(案 第62條 내지 第64條)**

가. 地下水汚染誘發 行爲·誘發施設을 계속 運營하는 者에게 汚染防止措置 命令

나.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者에게 施設의 閉鎖·移轉 및 撤去 措置

다. 이 경우 移轉·撤去가 地域社會 기타 公益上 지장을 가져올 경우, 處分에 갈음하여 過徵金 賦課

(10) 地下水汚染防止措置 命令 등의 不履行시 代執行 制度를 導入(案 第76條)

(11) 違法 不當 行爲의 輕重을 구분하여 罰則·過怠料 處分의 정도를 細分化 하고, 특히 命令 위반자 또는 不履行者에 대하여 重刑制度를 導入함 (案 第84條 내지 第91條)